

공정거래위원회 주요 심결사례

1999. 10. 4. 심결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삼천장 의사 및 연합장의 백화점의 거래강제행위에 대한 건 (9906부사0942)	삼천장 의사 및 연합장의 백화점은 한마음병원 장례식장을 운용함에 있어 '98. 10. 23. 한마음병원에서 사망한 망인의 장례와 관련하여 망인의 유족이 자신에게 자신의 장례식장을 이용하고 장례물품도 자신으로부터 제공받되 수의물품만 외부인으로부터 제공받겠다는 의사를 통보하자, 수의물품도 자신으로부터 제공받지 않으면 자신의 장례식장을 이용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유족이 할 수 없이 자신으로부터 수의물품을 제공받고 장례를 치르게 하였으며, '98. 11. 14. 사망한 망인의 장례와 관련하여 망인의 유족이 자신에게 자신의 장례식장을 이용하고 장례물품은 외부장의업자로부터 제공받겠다는 의사를 통보하자, 장례물품을 자신으로부터 제공받지 않으면 자신의 장례식장을 이용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유족이 할 수 없이 자신으로부터 장례물품을 제공받고 장례를 치르게 하는 등 유족들의 급박한 상황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자신의 장례물품을 함께 제공받도록 강제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3호 위반	◎ 거래강제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사업장의 출입구 등 고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전지 크기(78.8cm×109cm)로 연명으로 공표문을 작성하여 7일간 부착함으로써 공표토록 함

1999. 10. 5. 심결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주)신아에너지성거주유소의 석유판매업에 있어 서의 공급자표시위반행위에 대한 건 (9906전사0938)	(주)신아에너지성거주유소는 '99. 4. 13. (주)현주석유로부터 성거주유소를 인수하여 5. 1.부터 영업을 개시하면서 자신이 판매하는 석유제품의 공급자에 관해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수당시 성거주유소에 설치된 표시인 등에 표시된 LG정유 상표를 교체 또는 철거하지 않은 채로 (주)현주석유로부터 인수한 타이거석유 제품인 경유 199kl와 타이거석유로부터 직접 구입한 석유류 197.8kl를 LG정유 제품과 혼합하여 판매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3조제1	◎ 공급자표시위반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자신의 주유소 출입구 등 고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전지 크기(78.8cm×109cm)로 공표문을 작성하여 7일간 부착함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p>여수지역 4개 생활정보지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9905광사0769)</p>	<p>향제6호 위반</p> <p>주식회사 교차로·까지·21세기한려, 유한회사 벼룩시장의 대표이사들은 자신들의 시장점유율이 100%임을 이용하여 '98. 11월 중순경 여수시 여서동 소재 광주타임스 건물 1층 윗집에서의 모임에서 생활정보지의 발행횟수에 대해 주3회 발행으로의 공감대를 형성한 후, '99년 2월 초순경 생활정보지의 줄광고요금이나 자신들의 사업내용 및 활동은 각자의 영업능력과 경영전략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당경쟁에 따른 생활정보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유)벼룩시장과 (주)교차로가 주관이 되어 생활정보지의 주당 발행횟수 및 줄광고 요금에 대한 조정안을 마련한 다음, 2월말경 (유)벼룩시장의 대표이사가 동 조정안을 가지고 (주)까지와 (주)21세기한려의 대표이사를 차례로 만나 최종 협의를 통해 생활정보지의 주당 발행횟수는 종전의 주5회에서 주3회로 할 것과 줄광고 요금은 주3회 기준으로 동일요금으로 조정할 것을 합의하고, 이를 3. 1.부터 5. 1.까지 유지하여 여수지역 생활정보지 발행업 분야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위반</p>	<p>으로써 공표토록 함</p> <p>◎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연명으로 자신이 발행하는 생활정보지에 3단×10cm의 크기로 게재하여 공표토록 함</p>
<p>동양제과(주)의 부당한 경품류제공행위에 대한 건(9905유거0738)</p>	<p>동양제과주식회사는 경품고시 제14조에서 2 이상의 상품을 구입하여야만 문자·회화·부호 및 카드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의한 특정한 소비자현상 경품류제공행위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99. 5. 6.부터 6. 5.까지 31일동안 자신이 공급하는 '깨비불' 등 5개의 제품중 2개 이상을 구입하여 그 제품명을 엽서에 붙여 응모한 고객을 추천하여 당첨자에게 경품고시 제8조제1항에서 규정한 소비자현상경품의 총액한도인 예상매출액의 1%에 해당하는 18,420천원을 1,600천원 초과하는 경품총액 20,020천원 상당의 컴퓨터 2대, 레포즈 자전거 20대, 어린이용 아파치 자동차 500개를 제공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3호 위반</p>	<p>◎ 부당한 경품류제공행위를 하지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어린이신문(전판) 1개에 3단×10cm의 크기로 게재하여 공표토록 함</p>
<p>기아자동차(주)의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에 대한 건(9904유거0425)</p>	<p>기아자동차주식회사는 '94. 6월경 납품업체인 (주)루가통상과 천연가족시트세트 등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거래하여 오던 중, 자신의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루가통상에게 직접 천연가족시트세트를 판매할 수</p>	<p>◎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를 하지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p>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p>있는 권한을 부여한다는 명분으로 '95. 1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루가통상으로부터 납품받은 순정용품인 천연 가죽시트 및 비순정용품인 가죽핸들카바 등을 타당한 이유없이 동 사로 하여금 구입하도록 강요하였으며,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정비사업소 등 14개 정비사업소에서 자동차용품을 판매함에 있어 '95년 이후 루가통상 등 자신에게 자동차용품을 납품하는 업체들로부터 부당하게 판매사원들을 파견받아 당해 납품업체가 납품한 자동차용품뿐만 아니라 자신의 각 정비사업소에서 판매하는 모든 자동차용품의 판매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였으며, '95. 8월부터 '99. 2월까지 자신의 각 정비사업소에서 판매하는 자동차용품의 판매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및 포상금제도를 시행하면서 자동차용품의 판매실적이 우수한 정비사업소에 근무하는 납품업체들의 파견사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동 포상금은 당해 판매사원을 파견한 납품업체들에게 전액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4호 위반</p>	<p>령 받은 사실을 1개 중앙일간지(전판)에 4단×15cm의 크기로 게재하여 공표토록 함</p>

1999. 10. 6. 심결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p>신림동고시서적연합회의 경쟁제한행위 등에 대한 건(9904단체0500)</p>	<p>신림동고시서적연합회는 자신이 '99. 1. 25.경 구성사업자의 공동이익 증진 및 도서 등의 할인판매를 금지하기 위하여 제정하고 범무법인에서 공증받은 회칙상에서, 각 구성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5항 및 제7조제1항에 서적, 테이프 기타 모든 인쇄물의 할인판매를 금지하고,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설과 추석 등 명절에 각 1일 휴무 및 매월 2·3주째 일요일 중 1번 휴무토록 하며, 회원서점의 개점은 오전 7시 이후, 폐점은 오후 12시로 하고, 제7조제1항 및 제11조제6항에 노트 등 경품류 제공을 금지하며, 제11조제3항에 학원에 직판하는 출판사와 거래를 중단하는 등의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동 회칙 내용중 “서적 등의 할인판매 금지” 및 “휴무일 지정” 등의 내용을 30cm×42cm 크기의 종이에 인쇄하</p>	<p>◎ 구성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경쟁제한행위 및 사업활동제한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동 회칙의 해당조항을 삭제 및 개정하고 주도적 지위에 있는 5개 서점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각각의 사업장에 전지 크기로 7일간 게재토록 함</p>

사 건 명	위 반 내 용	시 정 조 치
	<p>여 6~7개의 회원서점 사업자에 1. 20.경 2~3일간 부착하였으며, 구성사업자들이 동 회칙을 준수토록 하기 위하여 제7조제1항에 회칙 규정을 1차 위반시 당해 위반 서점과 거래하는 출판사에 30일간의 출고중지 및 배송중단을 요청하고, 제7조제1항에 2차 위반시 자신 으로부터 제명하고 범칙금 1,000만원을 부과하는 내용 을 회칙에 규정하여 신림9동지역 고시서적 소매판매 업분야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고 구성사업 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위반</p>	

1999. 10. 7. 심결

사 건 명	위 반 내 용	시 정 조 치
<p>학교법인 연세대학교(연 세영동장례식장)의 부당 한 표시행위에 대한 건 (9812유거2072)</p>	<p>학교법인 연세대학교는 자신이 운영하는 연세영동장례 식장의 장의용품 판매장에 게시한 장의용품 가격표와 동 매장내의 수의진열장에 부착한 개별 표지판에 수의 명칭을 표시하면서, 10여종의 수의중 “순창전통수의”의 안감과 “보성수의(상)” 및 “보성수의”는 중국산 수입 마사로 해당 지역에서 수직베틀로 짜기만 한 원단의 수의로서 원단직조에 사용된 기초원자재인 실이 중국 산이고, 수입실은 삼베원료인 대마사 뿐 아니라 저마 사, 아마사 등으로 원단직조시 이들을 섞어 짜거나 대 마사가 아예 포함되지 않은 경우도 있으며, 원사 제조 공정이 표시된 해당지역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사 및 원단의 수입여부, 마의 종류 등을 밝히지 않고 국내산지명으로 수의명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6호 위반</p>	<p>◎ 부당한 표시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1개 중앙일간지(전 단)에 5단×10cm의 크기로 게재하여 공표토록 함</p>
<p>한국육가공협회의 구성 사업자에 대한 사업활동 제한행위에 대한 건 (9905경축0794)</p>	<p>한국육가공협회는 저율의 관세가 부과되는 쇠고기의 시장접근물량을 수입하여 회원사에게 공급함에 있어 자신이 '93. 11. 19 제정하고 '99. 2. 10. 개정한 SBS(업 계자율거래제도, Simultaneous Buy and Sell Tender System)수입쇠고기운영요령 제4조나항에 신규로 가입한 회원사도 기존회원사와 동일한 의무를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하여 가입 1년후부터 수입쇠고</p>	<p>◎ 부당한 사업활동제한행위 를 하지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 부터 60일 이내에 동 운영 요령의 해당규정을 삭제 또는 수정토록 함</p>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기를 공급한다고 규정하는 등 합리적인 사유와 객관적인 기준없이 기존회원과 차별하여 신규회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6조제1항제3호 위반	

1999. 10. 16. 심결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장인가구(주)의 거래거절 행위에 대한 건 (9907전사0997)	장인가구 주식회사는 자신의 대전광역시 대덕구소재 중리대리점이 '99. 4. 21. (주)아이디커뮤니케이션이 대전무역 전시관에서 개최한 「서울가구박람회-in대전」 행사에 참가의사를 표시하고 자신과 협의를 거쳐 5. 8. (주)아이디 커뮤니케이션과 동 박람회행사 참가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대전지역 3개 가구프라자 임대사업자들로부터 5. 10.과 5. 27. 2차례에 걸쳐 입점가구소매업자들의 각서와 함께 "박람회에 참여한 입점브랜드는 3개월내 매장을 철수하고 앞으로도 입점을 불허한다"는 내용의 행사불참 압력문서를 우편으로 받고, 5. 28. 중리대리점에 찾아가 동 박람회에 불참할 것과 동 박람회에 임의로 참가하는 경우 제품공급중단은 물론 대리점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중리대리점이 (주)아이디커뮤니케이션과 동 박람회행사 참가계약체결을 이유로 5. 29. 동 박람회에 자신의 가구제품을 진열·판매하자, 대리점도 독립된 사업자로서 본사의 지원없이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특별판매 행사실시 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5. 31. 자신의 용문대리점으로 하여금 중리대리점에 대한 제품공급중단과 대리점계약해지 계획을 통보하면서 용문대리점에게 중리대리점에 대해 제품을 공급하지 못하도록 요구하고, 6. 1. 중리대리점에 대해 대리점계약해지를 통보한 후, 6. 5.경 대전지역 3개 가구프라자를 방문하여 중리대리점에 대한 제재내용을 설명하면서 가구프라자에 입점한 자신의 대리점에 대한 제재를 취하지 말도록 요청하고, 6. 12. 중리대리점 폐쇄사실을 대전지역 일간지에 공고하는 등 부당하게 거래를 중단하는 행위를	◎ 부당한 거래중단행위나 계약해지행위를 하지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1개 중앙일간지(전판)에 3단×10cm의 크기로 게재하여 공표토록 함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1호 위반	
테크노-마트 21 지하1층 상우회의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게 한 행위에 대한 건 (9906단체0892)	테크노-마트 21 지하1층에서 매장을 운영하는 사업자 단체인 상우회는 테크노-마트 21 지하1층에서 상호명 샌디클래식이라는 매장을 운영하는 구성사업자가 '99. 2. 20.부터 셔츠류 제품을 5,000원 균일가로 진열·판매 하자, 테크노-마트 지하1층에서 의류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33인의 연대서명을 받아 관리회사인 프라임개발 주식회사에게 「매장질서 위반업체 단속 요청서」라는 공문을 통하여 동 매장에 대해 정당한 이유없이 전기공급을 중단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이에 따라 프라임개발주식회사는 동 매장에 대해 3월 중순경부터 5. 17. 까지 전기공급을 중단하여,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도록 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6조제1항제4호 위반	◎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구성사업자 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토록 함

1999. 10. 26. 심결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주)대우의 부당한 광고 행위에 대한 건 (9901기획0039)	주식회사 대우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동 492-5번지에 주상복합건물인 「대우에덴프라자」를 분양하면서 신문 및 광고전단 등을 통하여 조감도, 현장위치도 등에 대우에덴프라자 건물이 동아대 입구 길목지점에 건축되는 것처럼 실제와 다르게 표현하고, 동 건물 인근의 경전철 신설사업이 확정되었는지의 여부 및 그 완공시기 등에 관한 부가표현 없이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김해~사상 경전철 하단까지 연장”, “경전철 동아대역 신설 등 교통요충지”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으며, “대형활어회센터 입점결정, 롯데리아 동아대점 입점결정”이라며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광고하였고, 동 건물의 주차공간이 세대당 약 0.7대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1세대당 2대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넓은 주차공간”이라는 표현으로 부당한 광고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6호 위반	◎ 부당한 광고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은 받은 사실을 부산광역시에서 발행되는 3개 지방일간지(전판)에 5단×15cm의 크기로 게재하여 공표토록 함